

아시아

일본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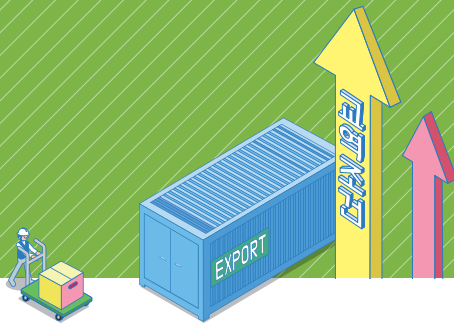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09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024
03. 비관세장벽 현황	027
04. 수출 애로사항	039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042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일본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용어 정의]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2년 식품 시장규모는 5,711억 달러(한화 약 748조 1,410억 원)로 전년 대비 1.0% 성장하여 전년과 유사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1,675억 달러(한화 약 219조 4,250억 원)로 전체의 29.3%에 해당함
 - * 채소류 시장이 1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낙농품(5.5%), 육류(5.3%), 과일 및 견과류(5.0%)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4,036억 달러(한화 약 528조 7,160억 원)로 전체의 70.7%를 차지함
 - * 스낵류 시장이 전체의 44.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되었고, 뒤이어 편의식품(11.7%),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9.2%), 소스 및 향신료(3.8%) 순임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29.0	532.5	550.0	565.6	571.1	100.0	1.0
신선식품	153.8	155.1	160.2	165.1	167.5	29.3	1.5
- 채소류	68.1	68.5	70.8	72.8	73.7	12.9	1.2
- 낙농품	28.4	28.8	29.8	30.9	31.4	5.5	1.6
- 육류	27.5	27.9	28.8	29.8	30.3	5.3	1.7
- 과일 및 견과류	26.4	26.5	27.3	28.0	28.5	5.0	1.8
- 유제품	3.4	3.4	3.5	3.6	3.6	0.6	0.0
가공식품	375.2	377.4	389.8	400.5	403.6	70.7	0.8
- 스낵류	234.9	236.4	244.1	251.0	253.6	44.4	1.0
- 편의식품	61.3	61.9	64.1	66.1	66.9	11.7	1.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0.6	50.6	51.9	53.1	52.3	9.2	-1.5
- 소스 및 향신료	20.2	20.2	20.8	21.3	21.6	3.8	1.4
- 펫푸드	3.2	3.5	4.1	4.4	4.6	0.8	4.5
- 스프레드 및 당류	4.1	3.9	3.9	3.8	3.8	0.7	0.0
- 영유아용 식품	0.9	0.9	0.9	0.8	0.8	0.1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인구 1억 2,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0.5% 감소함(2021년 전체 인구 수 약 1억 2,460만 명)
 -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가 5,711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4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남녀비중은 균등한 편이며, 여성 인구 수는 전체의 51.4%에 해당하는 6,371만 명, 남성 인구 수는 48.6%에 해당하는 6,024만 명으로 집계
- 2022년 가구 수는 5,356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1만 8,240달러(한화 약 2,389만원) 규모임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1년 대비 15.16% 감소함
-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4,548달러(한화 약 596만원)로 전년 대비(1.4%) 증가함
 - 신선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334달러(한화 약 175만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29.3% 차지함
 - * 채소류 소비액은 587달러(한화 약 77만 원)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뒤이어 낙농품 250달러(한화 약 33만원), 육류 241달러(한화 약 32만원), 과일 및 견과류 227달러(한화 약 30만원) 순임
 - 가공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3,214달러(한화 약 421만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70.7% 차지함
 - * 스낵류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이 2,020달러(한화 약 265만원)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편의식품 533달러(한화 약 70만원),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16달러(한화 약 55만원) 순임

1인당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156.9	4,195.6	4,347.5	4,486.0	4,548.0	100.0	1.4
신선식품	1,208.0	1,221.7	1,266.6	1,309.5	1,334.4	29.3	1.9
- 채소류	535.3	540.0	559.5	577.3	587.2	12.9	1.7
- 낙농품	223.4	226.7	235.9	244.8	250.2	5.5	2.2
- 육류	215.8	219.6	227.7	236.3	241.4	5.3	2.2
- 과일 및 견과류	207.1	208.7	215.8	222.4	227.0	5.0	2.1
- 유지류	26.4	26.7	27.7	28.7	28.6	0.6	-0.3
가공식품	2,948.9	2,973.9	3,080.9	3,176.5	3,213.6	70.7	1.2
- 스낵류	1,847.0	1,863.0	1,930.0	1,991.0	2,020.0	44.4	1.5
- 편의식품	482.0	487.6	506.6	524.1	532.7	11.7	1.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97.4	398.5	410.3	420.8	416.4	9.2	-1.0
- 소스 및 향신료	158.8	159.6	164.6	169.1	171.8	3.8	1.6
- 펫푸드	24.9	27.7	32.2	34.5	36.5	0.8	5.8
- 스프레드 및 당류	32.1	30.8	30.5	30.3	30.1	0.7	-0.7
- 영유아용 식품	6.7	6.7	6.7	6.7	6.1	0.1	-9.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유지류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함

* 육류(1.4%), 낙농품(1.3%), 과일 및 견과류(1.0%), 채소류(0.7%)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유지류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세를 보임

- 가공식품 중 펫푸드가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전년 대비 1.9% 감소함

1인당 식품 소비량(2018~2022)

(단위 : kg,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186.7	182.1	182.9	182.2	183.5	0.7
	- 낙농품	78.2	77.2	78.2	78.5	79.5	1.3
	- 과일 및 견과류	32.4	31.3	31.1	30.9	31.2	1.0
	- 육류	14.6	14.5	14.6	14.6	14.8	1.4
	- 유지류	5.3	5.2	5.2	5.2	5.1	-1.9
가공식품	- 스낵류	107.0	104.7	105.7	105.5	106.0	0.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95.0	93.7	94.5	94.4	92.6	-1.9
	- 소스 및 향신료	58.9	58.2	58.9	59.1	59.4	0.5
	- 편의식품	27.2	26.5	26.8	26.8	27.0	0.7
	- 펫푸드	6.4	6.7	7.6	7.2	7.6	5.6
	- 스프레드 및 당류	7.1	6.6	6.4	6.1	6.1	0.0
	- 영유아용 식품	0.4	0.4	0.4	0.3	0.3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농식품 수출액은 75억 2,175만 달러(한화 약 9조 8,535억 원)로 전년 대비 6.1% 감소함
 - 주요 수출국은 중국(18.3%), 홍콩(16.8%), 미국(14.6%)이며, 대한민국 수출액은 3억 211만 1,000달러(한화 약 3,958억 원)로 4.0%를 차지함
 - * 對중국 수출액은 13억 7,394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7,999억 원)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8.7% 성장함
 - * 對홍콩 수출액은 12억 6,384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6,556억 원)로 전년 대비 24.4% 크게 감소하였으며,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4.1%로 집계됨
 - * 對미국 수출액은 10억 9,668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4,367억 원)로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기록함
 - * 對한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 대상국 중 7위 규모로, 전년 대비 5.8%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5,878,562	6,115,321	6,795,947	8,007,235	7,521,755	100.0	-6.1	6.4
1 중국	692,316	868,510	1,117,836	1,313,443	1,373,947	18.3	4.6	18.7
2 홍콩	1,492,372	1,448,668	1,739,956	1,672,745	1,263,844	16.8	-24.4	-4.1
3 미국	798,849	861,870	911,413	1,192,131	1,096,681	14.6	-8.0	8.2
4 대만	719,275	721,989	784,894	966,179	946,592	12.6	-2.0	7.1
5 베트남	261,159	265,373	317,002	367,843	399,573	5.3	8.6	11.2
6 싱가포르	231,037	253,263	253,289	335,852	380,470	5.1	13.3	13.3
7 한국	412,893	307,563	238,769	285,669	302,111	4.0	5.8	-7.5
8 호주	190,378	183,509	178,683	222,703	221,740	2.9	-0.4	3.9
9 태국	137,548	149,855	146,326	194,574	202,134	2.7	3.9	10.1
10 말레이시아	56,447	71,807	89,315	137,458	154,330	2.1	12.3	28.6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품목별로는 조제식료품 수출액이 9억 3,565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2,257억 원)로 12.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위스키(5.7%), 소스류 기타(5.4%) 순임

* 주로 가공식품 수출이 주를 이루며, 신선식품 중 신선·냉장 쇠고기(2.8%)가 2억 700만 6,000달러(한화 약 2,712억 원), 냉동 쇠고기(2.5%)가 1억 8,604만 달러(한화 약 2,437억 원) 수출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5,878,562	6,115,321	6,795,947	8,007,235	7,521,755	100.0	-6.1	6.4
1 조제식료품	738,042	829,158	1,202,292	1,192,338	935,655	12.4	-21.5	6.1
2 위스키	135,680	178,470	254,059	420,653	429,541	5.7	2.1	33.4
3 소스류 기타	326,636	343,912	378,403	437,267	409,462	5.4	-6.4	5.8
4 베이커리류	311,802	308,337	318,856	400,366	382,649	5.1	-4.4	5.3
5 발효음료	209,558	222,849	232,820	377,246	372,377	5.0	-1.3	15.5
6 비알코올음료	186,492	206,121	234,968	263,518	270,686	3.6	2.7	9.8
7 신선·냉장 쇠고기	121,848	128,849	135,421	232,108	207,006	2.8	-10.8	14.2
8 냉동 쇠고기	102,078	143,380	134,876	256,857	186,040	2.5	-27.6	16.2
9 신선 사과	126,555	132,975	100,273	147,790	143,259	1.9	-3.1	3.1
10 동식물성 유지	50,248	55,006	68,312	103,642	131,314	1.7	26.7	27.1

* 주1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2년 농식품 수입액은 총 735억 6,217만 2,000달러(한화 약 96조 3,664억 원)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미국(22.3%)이며, 뒤이어 중국(11.4%), 호주(7.7%), 브라질(6.4%) 순임
 - *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63억 8,431만 6,000달러(한화 약 21조 4,635억 원)로 전년 대비 8.8%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7%를 기록함
 -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83억 9,702만 8,000달러(한화 약 11조 원)로 전년 대비 5.0% 증가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2억 4,796만 1,000달러(한화 약 2조 9,448억 원)로 전체 수입의 3.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8.6%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62,835,095	63,457,399	61,317,927	66,801,898	73,562,172	100.0	10.1	4.0
1 미국	14,157,390	13,203,783	12,887,972	15,062,798	16,384,316	22.3	8.8	3.7
2 중국	8,242,059	7,979,721	7,553,528	7,994,265	8,397,028	11.4	5.0	0.5
3 호주	4,353,865	4,184,956	3,759,294	4,337,673	5,637,515	7.7	30.0	6.7
4 브라질	2,403,084	3,407,771	3,428,219	3,170,477	4,687,230	6.4	47.8	18.2
5 태국	4,349,737	4,379,675	4,171,027	4,206,517	4,625,325	6.3	10.0	1.5
6 캐나다	3,695,962	3,853,445	3,871,437	4,436,555	4,488,220	6.1	1.2	5.0
7 이탈리아	2,937,073	2,736,030	2,838,712	3,316,787	2,415,028	3.3	-27.2	-4.8
8 한국	1,999,761	2,163,579	2,144,893	2,069,891	2,247,961	3.1	8.6	3.0
9 프랑스	1,928,915	2,036,149	1,802,771	1,979,699	2,095,269	2.8	5.8	2.1
10 뉴질랜드	1,483,225	1,621,521	1,614,607	1,718,835	1,770,680	2.4	3.0	4.5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은 옥수수 기타(7.9%), 대두 기타(3.5%), 조제 닭고기(3.4%) 등 신선 농축산물 위주임
 - * 옥수수 기타 수입액은 58억 3,768만 1,000달러(한화 약 7조 6,474억 원)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8% 증가함
 - * 대두 기타의 수입액은 25억 9,726만 3,000달러(한화 약 3조 4,024억 원)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13.9%로 성장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62,835,095	63,457,399	61,317,927	66,801,898	73,562,172	100.0	10.1	4.0
1 옥수수 기타	3,363,106	3,510,218	3,283,435	4,726,974	5,837,681	7.9	23.5	14.8
2 대두 기타	1,540,614	1,535,275	1,491,254	2,075,822	2,597,263	3.5	25.1	13.9
3 조제 닭고기	2,419,251	2,420,340	2,229,177	2,251,722	2,488,782	3.4	10.5	0.7
4 밀과 메슬린	1,574,950	1,416,818	1,452,764	1,702,993	2,392,974	3.3	40.5	11.0
5 돼지고기 (냉동/기타)	2,460,385	2,655,799	2,368,736	2,338,279	2,380,734	3.2	1.8	-0.8
6 유채씨 기타	1,125,496	1,032,791	965,838	1,602,764	1,966,561	2.7	22.7	15.0
7 냉동 쇠고기	1,363,366	1,394,397	1,375,627	1,504,700	1,897,436	2.6	26.1	8.6
8 신선 돼지고기	1,935,582	1,964,463	2,070,159	2,097,297	1,843,808	2.5	-12.1	-1.2
9 신선 쇠고기	2,089,662	2,110,172	1,950,940	2,187,537	1,839,177	2.5	-15.9	-3.1
10 커피	1,146,582	1,139,563	1,052,939	1,184,028	1,624,593	2.2	37.2	9.1

* 주1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한국의 對일본 농식품 수출현황

- 2022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5억 3,717만 9,000달러(한화 약 2조 137억 원)로 전년 대비 8.1% 증가함
 - 농산물 비중은 93.8%로 총 14억 4,170만 2,000달러(한화 약 1조 8,886억 원)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7.8% 증가함
 - 축산물 수출 규모는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5,905만 4,000달러(한화 약 774억 원)로 전년 대비 28.6%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8%의 성장률을 기록함
 - 임산물은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3,642만 3,000달러(한화 약 477억 원)로 전년 대비 6.6%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1%의 감소율을 기록함

한국의 對일본 수출 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323,839	1,426,883	1,336,388	1,422,096	1,537,179	100.0	8.1	3.8
농산물	1,234,109	1,331,653	1,254,577	1,337,199	1,441,702	93.8	7.8	4.0
축산물	33,948	30,933	34,843	45,904	59,054	3.8	28.6	14.8
임산물	55,782	64,297	46,968	38,993	36,423	2.4	-6.6	-10.1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한국산 농식품은 조제식료품(5.8%), 단고추(4.7%), 설탕과자류(4.5%), 조미김(4.4%), 김치(4.0%) 등임

* 설탕과자류를 제외한 상위 수출 품목은 전년 대비 수출 규모 감소세로 나타남

* 조제식료품 16.7%, 단고추 10.9%, 조미김 9.2%, 김치 23.9%의 감소율을 보임

* 조미김은 약 6,766만 달러(한화 약 886억 원) 수출 규모를 보이며 2019년 이후 최근 4개년 연평균 47.6%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한국의 對일본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323,839	1,426,883	1,336,388	1,422,096	1,537,179	100.0	8.1	3.8
1 조제식료품	108,664	94,909	97,918	107,356	89,402	5.8	-16.7	-4.8
2 단고추 (벨타입)	91,821	91,244	86,211	81,795	72,880	4.7	-10.9	-5.6
3 설탕과자류	69,031	69,852	67,146	62,669	69,603	4.5	11.1	0.2
4 조미김	0	21,060	78,073	74,508	67,660	4.4	-9.2	47.6 ³⁾
5 김치	56,104	55,184	71,099	80,124	60,996	4.0	-23.9	2.1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조미김의 연평균 성장률은 '19~'22년까지 4개년을 기준으로 제공함

3. 통관 및 검역 제도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정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정 완료	국내 수출업체
적하목록 사전제출	-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NACCS 시스템을 통해 화물 적하목록 제출 - 제출내용 : ① 제품정보 ② 송하인 및 수하인 정보 ③ 운송수단 정보 등	일본 운송·수입 업체
수입신고	- 일본 도착 후 NACCS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상업송장 ② 선하증권 ③ 원산지증명서 ④ 포장명세서 등	일본 수입업체
수입검사	- 관할 세관에 위치한 검역소(식물방역소 및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 신청 ① 식물방역소 : 채소, 과일 등 식물계 식품 ② 동물검역소 :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물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검사 진행 ① 서류심사 ② 현장검사 ③ 시험검사 - 또한,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립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① 검사명령 ② 지도검사 ③ 모니터링 검사 ④ 행정검사	일본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 관세 : (CIF가격+가산요소*) X 관세율 * 가산요소 : 수입항에서의 운송 관련 비용, 라이선스로 등	일본 수입업체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 위생기준·검역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 사전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 일본 수출 시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일본과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일본으로 △토마토 △시금치 △배추속 △근대속 식물의 지하부 등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UNI-PASS를 통해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수출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일본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일본 수입통관·검역 절차

사전 수입신고	● 일본 수입업체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항 도착 7일 전까지 사전 수입신고 진행 가능 - 일본 식품 수입업체는 물품 도착 7일 이전에 수입신고 건별로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기타 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에 따라 위생증명서, 시험성적표 등의 관련 서류를 검역소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수입신고 진행 가능 - 사전 수입신고 진행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검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화물 도착 직후 수입제증명이 수입업체에 교부됨 - '수입제증명'을 발급받은 일본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	--

적하목록
사전제출

● 일본 수입업체 및 운송업체는 출항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 사전제출 필요

-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정보를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NACCS)를 통해 제출해야 함

- 적하목록 제출 시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함

일본 적하목록 제출서류

① 송하인 및 수하인 정보
② 착하통지처 정보
③ 품명
④ HS 코드
⑤ 총중량
⑥ 용적
⑦ 컨테이너 정보 등

수입신고

● 일본 수입업체는 일본 도착 후 수입신고 진행 필수

- 수입신고서를 비롯한 제반서류를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해 제출해야 함

일본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상업송장
② 선하증권
③ 원산지증명서
④ 포장명세서
⑤ 수입신고서
⑥ 화물도착안내서
⑦ 운임청구서
⑧ 원재료 및 제조과정설명서(필요 시)
⑨ 위생증명서·시험성적서(필요 시) 등

수입검사

● 일본 수입업체는 화물 도착 후 각 검역소에 검사 신청

- 채소, 과일 등 식물계의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물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 식물검역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 ① 수입금지 품목 ② 검사대상 품목 ③ 검사제외 품목으로 구분해 검역을 진행하며,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음

수입검사

- 수출업자는 식물류 등을 수출하기 위해 수입검사 신청서와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 함
- 동물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전염병의 국내 침입 방지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검역대상 품목(지정검역물)을 지정함
- 동물검역대상 품목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 수입검역증을 취득하거나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등 육류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열처리 가공육(소시지, 너겟, 훈제 등), 돼지 열처리 내장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수출 가능함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검사 진행

- △신고내용의 확인(서류심사)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한 현장검사 △시험검사에 의한 확인이 진행됨
- 서류심사는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 수출품목, 제조사·제조소, 원재료, 제조방법, 식품첨가물의 사용 유무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감시원이 실시함
- 현장검사는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식품, 처음 수입되는 식품, 운송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등에 식품 위생감시원이 식품의 외관에 문제 발생 여부를 검사하며, 모니터링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 하기도 함
- 시험검사 시행 시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검사를 명령하거나 지도검사 등을 검역소에서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함
- 적합 판정의 경우 검역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을 진행함
- 부적합 판정의 경우 용도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통관하거나,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함. 또는 폐기 처분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함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검사 내용

서류심사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원재료 사용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절성 여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 제조사·제조소의 과거 위생 관련 부적격 사례 여부, 수출국에서 회수 대상 제품 여부, 필요한 서류(수출국 위생증명서 등)의 첨부 여부를 검사
현장검사	부패 등 식품으로 부적합 상태 여부, 이물의 혼입 여부 보관 상태(온도 등) 적절 여부,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상태(온도 등) 적절 여부, 독어 등 혼입 여부(아류), 위험 부위 등 혼입 여부(쇠고기)
시험검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잔류물,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등 병원성미생물, 성분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세균 수, 대장균군 등,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패류독소 등 유해물질, 미승인 유전자 변형 식품의 혼입, 방사선 살균 여부 등

-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립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① 검사명령 ② 지도검사 ③ 모니터링 검사 ④ 행정검사 실시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검사 내용

수입검사	검사명령	•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검역소가 수입자에게 수입신고 건마다 검사실시 명령 * 대상 품목, 검사 항목, 검체 채취방법, 검사 방법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표 * 수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관련 검사하고 적합 판정 전까지 수입절차 진행 불가
	지도검사	• 수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입자에 대해서 최초 수입 시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적합 판정 전까지 수입절차 진행불가
	모니터링 검사	• 식품위생을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목적으로 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수입된 물량의 30% 이내에서 관련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일본 내로 유통되며 위반 사례 발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짐
	행정검사	• 모니터링 이외의 행정검사로, 최초 수입 시나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 수송 도중 사고 발생 시 등 필요에 따라 검역소의 식품위생 감시원에 의한 검사 실시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일본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 관세율은 관세정률법에 의거 분류된 품목별로 정해져 있음 -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따라 기본세율, 잠정세율(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기본세율을 수정한 세율), 특혜세율(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 협정세율(WTO에서 정한 세율), EPA세율(경제자유협정을 체결한 당사국간 정해진 세율) 등 적용
------------------	---

FTA 체결현황

일본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발효) 싱가포르 EPA, 말레이시아 EPA, 칠레 FTA, 태국 EPA, 인도네시아 EPA, 브루나이 EPA, 필리핀 EPA, ASEAN EPA, 스위스 EPA, 베트남 EPA, 인도 EPA, 페루 EPA, 호주 EPA, 몽골 EPA, 멕시코 EPA, TPP12, TPP11, EU EPA, US EPA, UK EPA, RCEP	(협상중) 콜롬비아 EPA, 한중일 FTA, 튀르키예 EPA (협상재개 · 개시 여건조성) 한국 FTA, GCC FTA, 캐나다 EPA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RCEP	해당사항 없음	한-중-일 FTA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4)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칠썩속, 카네이션, 튤립

* 수출불가 품목(화상병 기주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수출 가능

• 축산물

- 삼계탕, 열처리 돈육, 증제 피혁분, 유제품, 열처리 가금육(소시지, 너겟, 훈제 등), 열처리 내장 및 부산물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재식용 식물, 과실류, 절화류, 화분 등(단, 종자는 수출 가능)
: Malus속(사과 등), Pyrus속(배 등), Aronia속(아로니아 등), 비파(Loquat), 퀸스(Quince), 서양모과(Medlar), 모과(Pseudocypdonia sinensis), Amelanchier속(채진목속), Choeromeles속(명자나무 등), Cotoneaster속(섬개야광나무 등), Crataegomespilus속,

4) 자료 :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Crataegus속(산사나무속), Dichotomanthes속, Docynia속, Heteromeles속, Osteomeles속, Peraphyllum속, Photinia속(홍가시나무속), Pyracantha속(피라칸사속), Sorbus속(마가목 등), Stranvaesia속

* 우리나라의 화상병 발생으로 '15. 6. 1일부터 상기 품목은 수출 금지됨

- 재식용, 생식물 포함/과실 및 종자 제외

: Prunus 속(복숭아, 벚나무 등), Euonymus europaeus(유럽빗살나무),
Lyciumbarbarum(영하구기자), Ligustrum(쥐똥나무)

* 상기 품목은 자두곰보병 기주식물로 수출이 금지됨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서울 이치바(일본)
업체 유형	한국식품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채소류 중에서는 배추, 고추, 깻잎, 애호박이 인기가 있으며, 과일 중에서는 감, 매실, 제주 감귤의 수요가 높음
 - 현지에서 가공식품으로는 라면, 과자류가 가장 인기 있으며, 고추장, 된장 등 장류, 조미료에 대한 수요가 있음
 - 한국 드라마나 SNS 등을 통해 접한 냉동 간식 제품인 핫도그나 호떡, 만두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함
- 수입 시 애로사항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한국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제품 수입 시 원산지증명을 비롯한 관련 서류 증빙으로 인한 통관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2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샘플링 검사 결과가 식품 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잠재적인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식품, 식품첨가제, 조리기구, 용기와 포장의 생산과 판매, 특정 국가 및 지역 또는 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2020년부터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도입되어 안전성을 평가한 물질만 사용 가능함
 - 식품첨가제로 많이 쓰이는 이산화규소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함
 - 2023년 5월 31일부터 한국산 사과주스의 파툴린(Patulin) 성분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빈도를 30% 강화함
- 일본의 경우 건강식품에 대한 분류가 엄격하여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건강식품이 아닌 한방재료를 사용한 약품으로 분류하여 약사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 일본에서는 동 식품을 약사법에 의해 효능을 명시하여 약품으로 분류하므로 해당 식품은 약사법에 의해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이 필요함
 - 2023년 5월 15일, 한국 홍삼의 '진세노사이드(사포닌)'가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홍삼 함유제품에 적용)
-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고추, 깻잎 등의 신선 채소류가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 문제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2021년 2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추 등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재개정하였으며, 신선 고추에 적용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 바 있음
 - * 한국산 청고추에 대한 일본 수출 시 부과되는 명령검사 성분(2가지) : 플루킨코나졸(ID등록시 면제), 헥사코나졸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 수입에 농약성분 잔류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2023년 8월 7일부터 농약성분 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함. 일본이 개정한 기준은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물질이 많아 대일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수출에 주의가 필요함

- 일본으로 특정 과일, 채소류의 공식 수입승인과 병해충위험평가 신청 시, 수출국은 2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1단계 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됨. 배 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2015년 6월 2일부터 한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이 금지된 후 해제되지 않았으며, 복숭아의 수입도 제한됨
- 육류 및 가공육과 이들의 가공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시, 한국 내 검역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 및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가공육의 경우, 120℃에서 4분 이상 가열하여 통조림과 동등상태의 멸균조건 충족 시 검역 통관가능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db.ffcr.or.jp/front/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7.html
미생물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
	위험 식품의 미생물 기준 규정 (후생노동성-식중독(Food Poisoning))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syokuchu/index.html

* 식품 위생에 대한 행정 주관이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으로 기관 변경 예정('24.4.1부터)

통보문 개정현황(2023년)

- 사과주스 모니터링 검사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3년 5월 31일부터 한국산 사과주스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함 ● 일본으로 수입된 한국산 사과주스를 대상으로 한 지도검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한국산 사과주스 및 원료용 사과 과즙의 '파툴린(Patulin)'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함

세부 내용	- 지도검사는 수입자가 등록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검사 - 파툴린은 곰팡이 독성 성분 • 이에 따라 한국산 사과주스 및 원료용 사과 과즙의 파툴린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빈도가 30%로 높아짐 • 일본의 사과주스 내 파툴린 성분의 잔류 허용기준은 0.05ppm 이하로 운영하는 데 반해 한국과 미국은 50ppb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통보일	-
시행예정일	2023년 05월 31일
개정현황	-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Id=NTB0203634

농약성분 잔류 허용기준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 일본은 식품 수입에 농약성분 잔류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잔류 기준치도 강화함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2년 9월 7일 이후 아시노나피르(Acynonapyr), 페나리몰(Fenarimol), 플록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플로리카미드(Flonicamid), 플루디옥소닐, 아이소페타미드(Isofetamid) 등의 잔류허용기준(MRL) 개정안을 마련하고 잇달아 WTO에 통보함 • 일본이 개정한 기준은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물질이 많아 대일 수출에 장애가 되어 수출에 주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에 비해 기준이 강화된 농약 잔류성분 및 적용 품목 - 아시노나피르(Acynonapyr) : 피망 0.7ppm(국내 : 2ppm), 배 및 서양 배 0.9ppm(국내 1.5ppm)/통보문 G/SPS/N/JPN/1096 - 페나리몰(Fenarimol) : 오이 0.07ppm(국내 : 0.5ppm), 우엉 0.5ppm(국내 1ppm)/통보문 G/SPS/N/JPN/1097 - 플록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 대두 0.01ppm(국내 0.05ppm), 고구마 0.01ppm(국내 0.05ppm) /통보문 G/SPS/N/JPN/1098 -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 감자 0.1ppm(국내 0.8ppm) /통보문 G/SPS/N/JPN/1099 -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 고구마 0.04ppm(국내 0.05ppm) /통보문 G/SPS/N/JPN/1101

세부 내용	-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 복숭아 0.8ppm(국내 1ppm) /통보문 G/SPS/N/JPN/1102 -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 완두 0.07ppm(국내 0.3ppm), 배추 2ppm(국내 3.0ppm) 현미 0.01ppm(국내기준 0.02ppm), 부추 2ppm(국내기준 7ppm) /통보문 SPS/N/JPN/1152 - 아이소페타미드(Isofetamid) : 파 0.6ppm(국내기준 1.5ppm) 통보문/G/SPS/N/JPN/1166 - 이프로디온(Iprodione) : 배추 3ppm(국내 5ppm), 오이 4ppm(국내 5ppm), 양배추 2ppm(국내 10ppm) /통보문 G/SPS/N/JPN/1218 •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잔류농약 허용치 확인 가능 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 잔류 농약 품목별 MRL 검색 시스템 -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 일본 잔류 농약기준치 검색 시스템
통보일	2022년 09월
시행예정일	2023년 08월 07일
개정현황	-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Id=NTB0203635

2. TBT ⁵⁾

주요 TBT 내용

-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정 성분 또는 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 개정된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8조에 따라, 식품 라벨링 표준이 부분적으로 개정됨
 - * 버팔로 원유가 “우유”범주에 추가됨에 따라 식품 라벨링 표기법 일부 개정됨
 - * 농산물 피클의 측정 방법 개정으로 식품 라벨링 표기법 일부 개정함
 - * 쌀 제품 중 오래된 세척일 또는 도정일이 표기된 미판매 쌀의 물류/판매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라벨링 표준 부분 개정함
 - * 영양소와 에너지가 표준값과 동일할 때 ‘낮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 라벨링 표준 부분 개정함
 - * 유전자 조작 제품의 라벨링 및 알레르겐 라벨링과 관련하여 유전자 변형 카놀라가 ‘특정 GM 제품’에 추가되도록 하는 개정을 제안함
 - * 세계 제조공정 및 품질에 대한 표시 기준 제정에 따라 제조일자 표시를 필수 기재 정보에서 자발적 기재 정보로 변경함

5)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 폐기물 분리 규정이 표시된 특정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지정 제품의 필수 표시 마크 규정의 일부가 개정됨
- 플라스틱, 코팅, 첨가제 등 식품접촉물질의 사용 가능 목록이 추가 및 수정되었으며,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됨
 - * '후생노동성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지정한 수량'이 발표됨
 - *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기구, 용기, 포장재의 규격과 표준이 확립되었으며 합성수지 규격이 일부 개정됨
 - * 우유 및 유제품용 도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규격 및 표준이 확립됨
- 동물성 유기농 가공식품과 동식물성 유기농 가공식품에 관한 표준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22년 일본 농업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로 유기농 알코올음료의 라벨 표시 요건이 시행됨. 또한, 재무성과 농림수산성은 식물 유래 유기농 제품, 유기농 가공식품 및 유기농 축산물에 관한 일본 농림규격을 개정할 계획을 발표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일본 소비자청(CAA)	https://www.caa.go.jp/en/policy/food_labeling/
JAS인증 스마일케어 인증	일본 농림수산성(MAFF)	https://www.maff.go.jp/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원산지 • 수입자 정보 • 원료 정보	• 식품첨가물 • 순중량 • 유통기한 • 보관방법	• GMO 성분에 대한 표시 • 알레르기 정보 • 영양성분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일본어로 표기할 것 • 폰트의 최소 사이즈는 8포인트로 할 것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몇 성분의 경우 용도와 같이 기입할 것 • 일반명이 더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 사용할 것(e.g. 비타민 C - Sodium L-ascorbate) • 중량이 많은 첨가물부터 내림차순으로 작성할 것	
	영양성분	•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 대하여 작성할 것 • 산화 지방, 콜레스테롤, 당,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성분의 경우 작성자 임의로 추가 가능 • 함유량은 100g 또는 100ml 또는 1회분 또는 1포장 단위로 표기할 것	
	유통기한	•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표기할 것	
	원료정보	•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할 것 • 복합재료의 경우 괄호 표기 후, 원재료를 표기할 것	
	보관방법	• 보관에 적절한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할 것 • 상온 보존 의의 유의 사항이 없을 시, 미표기 가능	
	수입자 및 제조자 정보	•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를 기재할 것	
	GMO 성분 표기	• 등록된 GMO 식품들인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목화,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원료를 함유하고 있음을 표기할 것	
	알레르기정보	• 새우, 게, 밀, 메밀, 달걀, 유제품, 땅콩, 호두 • 일본 소비자청은 다음 20개 항목에 대해서도 라벨에 표기하도록 권고 중 •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케슈넛, 키위, 소고기,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 복숭아, Yam(참), 사과, 젤라틴	
	순중량	• 단위는 g(또는 kg), l(또는 ml)로 기재할 것	
	원산지	• 일본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재료 별 원산지 정보 기재 의무 미적용	
	기타	•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JAS마크 표기 및 유기농 표기 가능 • 건강증진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담당 부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한 후,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마크의 표기와 적절한 기능성에 대한 홍보 문구 사용 가능	

*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일본소비자청(消費者)

• 차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침출차																				
원재료(원료원산지명) /첨가물	녹차(일본), 말차(교토부)																				
내용량	1봉지당 1.8g(20봉입)																				
상미기한	개봉구 아래 기재																				
보존방법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여 보관해 주십시오																				
판매자 정보	주식회사 이토엔, 도쿄도 시부야구 혼마치 3-47-10																				
제조지(원산지)	일본																				
유통기한	바로 오른쪽 면에 기재																				
영양성분표시	<table><tr><th>구 분</th><th>추출 전</th><th>추출 후</th></tr><tr><td>에너지(칼로리)</td><td>6kcal</td><td>0kcal</td></tr><tr><td>단백질</td><td>0.4g</td><td>0g</td></tr><tr><td>지방</td><td>0.03g</td><td>0g</td></tr><tr><td>탄수화물</td><td>1g</td><td>0g</td></tr><tr><td>식염상당량</td><td>0.0002g</td><td>0g</td></tr></table>			구 분	추출 전	추출 후	에너지(칼로리)	6kcal	0kcal	단백질	0.4g	0g	지방	0.03g	0g	탄수화물	1g	0g	식염상당량	0.0002g	0g
	구 분	추출 전	추출 후																		
	에너지(칼로리)	6kcal	0kcal																		
	단백질	0.4g	0g																		
	지방	0.03g	0g																		
	탄수화물	1g	0g																		
	식염상당량	0.0002g	0g																		
차 카테킨 90mg(추출 후)																					

• 식혜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간조, 식물성 음료	
원재료명	감주(국내 제조) (쌀, 쌀 누룩, 소금)	
유통기한	유통 상단에 기재	
내용량	1000ml	
저장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 보관(단, 개봉 후 10℃ 이하의 냉장보관)	
판매사	마루코메 주식회사(나가노현 나가노시 안모리 883)	
제조사	- 우오누마 양조 - 제조사 고유 기호는 유통기한 하단 좌측, 로트번호는 유통기한 하단우측에 표기	
전자레인지 이용 시	100ml당 50초(500w기준)	
영양성분표시(100ml당)		
	에너지	76kcal
	단백질	1.3g
	지방	0.3g
	탄수화물	17.0g
	식염상당량	0.21g
	사탕수수	0g
	알코올	0g
100ml 기준		

인증

[선택 인증]

• JAS

- JAS인증은 일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한 인증으로, 유기식품(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임산물, 특정 육가공품, 양식어류 등에 대한 세부 규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식품의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획득 가능함. 그러나 JAS 인증 미취득 시 ‘유기’, ‘오가닉’ 표시 및 이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인증명	JAS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강제유무	권장(유기농 등 유사표기 시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생산 일정 관리 담당자의 성명·약력 등	
비용	1,200~2,000만원	
소요기간	8주 이상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 발급(1년 유효)	

• JGAP

- JGAP 인증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형 농업과 연계하고자 하며 글로벌 GAP와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과, 곡물, 차에 적용. 4,500개 농장에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제기준 Global GAP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됨.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 안전성, 환경보전형 농업, 노동의 안전을 배려한 농장 또는 단체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인증명	JGAP 인증(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登録番号 123456789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JGAP 협회	
강제유무	권장(농장이나 농업경영체만 신청가능)	
제출 서류	생산자명단, 필지명단, 인증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비용	품목당 128,000엔 이상	
소요기간	약 4주(사전 준비기간 제외)	
절차	‘JGAP관리점과 적합 기준’ 사전확인 및 자가점검 → 심사 신청 → 심사 진행 → 판정 → JGAP 인증서 발급(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은 고령자용 식품을 범위를 넓혀 씹거나 삼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 모두를 위한 식품 기준으로, 식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점도를 높인 식품은 유형과 정도에 따라 라벨을 구분함. 젤리, 푸딩, 죽 형태의 부드러운 식품이나 단백질 등 영양소를 보충하는 기능성 식품에 적용할 수 있음. 식품의 형태 및 용도에 따라 7등급(황색4, 적색3)으로 분류되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마크 색을 달리함

인증명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 스마일케어 인증신청서(회사명, 상품상태, 연간 생산예정량 등) - 라벨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 함 - 청색 라벨 : 자기적합선언 및 상품 소개 URL - 황색 라벨 : 저작배려식품에 대한 JAS 규격 인증서 사본 - 적색 라벨 : 특별용도식품 표시 허가서 사본)	
비용	없음(온라인 등록)	
소요기간	2개월 이내	
절차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신청 → 신청확인 및 서류 적부심사 → 인증마크 발급(유효기간 무기한)	

3. 통관거부사례 현황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3년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30건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 건수는 107건으로 집계됨. 사유별로는 위생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21~23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성분 부적합	4	8	4	16
위생	12	20	21	53
서류미비	0	0	0	0
잔류농약 검출	21	5	2	28
기타	5	2	3	10
합계	42	35	30	107

2023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3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한 개 문제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유가 확인된 복합 문제사례를 포함하면 총 31건으로, 위생 21건, 성분 부적합 5건, 잔류농약 검출 2건, 기타 3건으로 집계되었음

2023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0	0	0	1	1	2	0	0	1	0	0	0	5
위생	1	1	4	6	0	3	1	2	2	0	0	1	21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잔류농약 검출	2	0	0	0	0	0	0	0	0	0	0	0	2
기타	0	0	0	0	0	0	0	0	0	0	2	1	3
합계	3	1	4	7	1	5	1	2	3	0	2	2	31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성분 부적합	폴리소르베이트 기준치 초과 검출	3
	시안화물 기준치 초과 검출	1
	파툴린 기준치 초과 검출	1
위생	대장균 양성	11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 검출	7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 양성	3
잔류농약 검출	헥사코나졸 검출	2
기타	보존 기준 부적합	2
	성분규격 부적합	1
합계		31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음료	1	3.2	세균 검출
	기타조제 농산품	1	3.2	미생물 양성
	채소류	2	6.5	잔류농약 검출
	낙농품	2	6.5	대장균 양성
	과자류	6	19.4	대장균 양성
	커피류	2	6.5	보존 기준 부적합
	당류	1	3.2	성분규격 부적합
	과실류	1	3.2	파툴린 검출
	소스류	4	12.9	세균 검출
소 계		20	64.5	
수산물	연체동물	3	9.7	대장균 양성
	갑각류	3	9.7	세균 검출
	어류	5	16.1	대장균 양성
소 계		11	35.5	
총 합 계		31	100.0	

No.	제목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기법	해당국가	일본
			관련품목	밀가루
			유형*	TBT
1				
주요 내용	2022년 3월 31일까지 일본 내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가공식품(수입식품 제외)의 가장 높은 중량 및 비율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 2017년 9월 1일 식품표시법에 근거하는 식품표시기준 개정에 따름 [주요 내용] -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붙여 “원재료명(○○제조)”의 형식으로 국가명을 ○○에 기입함 - 중량 비율 2위 이하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김 - 대상 원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 중간 가공원재료의 『제조지』를 표시 - 원산국이 여러 개인 경우 중량 비율이 높은 순으로 국가명을 표시하고, 3개국 이상은 「기타」로 표시가 가능함 『국가별 중량 표시』가 곤란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성 표시』, 『일괄표시』가 인정됨 - 원재료의 중량 순위의 변동 또는 원산지의 변경이 전망되는 경우, 과거의 사용실적(제조일을 포함한 연도에서부터 역산한 3년 중 1년 이상의 실적)에 따라 복수의 원산지를 ‘또는’으로 표시해야 함(예 : 돈육(미국 또는 캐나다)) - 원재료의 원산지별 사용실적에 따라 3개 이상의 외국 원산지 표시에서 중량 순위의 변동 또는 원산지 변경이 전망되는 경우 “수입(일괄)”으로 표시함			
	애로·건의 사항	가공식품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표기법이 변경되어 밀가루가 원재료인 가공식품의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적용받지 않지만, 현지 밴더 또는 유통사에서 일본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요청함		
	기타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기 제도》 규정 및 매뉴얼 https://www.maff.go.jp/j/syouan/hyoji/gengen_hyoji.html		

No.	제목	과자류 폴리소르베이트 사용기준	해당국가	일본
2			관련품목	과자류
			유형*	SPS
주요 내용		• 일본은 후생노동성 고시 제 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食品, 添加物等の規格基準)》에 근거하여 식품 내 잔류농약 허용량과 식품첨가물 사용을 감독하며, 사용기준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음 •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중 과자류에서 첨가물 사용기준 초과로 인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 ‘지정첨가물’, 오랫동안 일본에서 사용되어져 온 ‘기존 식품첨가물’, 별도 지정된 ‘천연 향료 기원 물질’과 식품 형태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일반 음식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있음 • 폴리소르베이트80는 분말믹스, 과자 제조용 장식, 생양과자, 기타 식품 등에 0.02g/kg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		
애로·건의 사항		• 과자류(프레첵) 제품이 폴리소르베이트 사용 기준을 초과하여 통관거부된 사례가 있었음. 한국과 첨가물 사용기준이 달라 제품 개발 및 생산 시 일본 전용 제품을 만들어야 함		
기타		※ 일본의 잔류 농약 및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검색 시스템 https://db.ffcr.or.jp/front/ ※ KATI(농식품수출정보) 국가별 식품첨가물/유해물질DB 검색 시스템 http://kati.net/additive/additiveList.do		

No.	제 목	냉동식품의 세균 수 검출 기준	해당국가	일본
			관련품목	냉동식품
			유형*	SPS
	주요 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의 식품별 표준을 통해 냉동식품에 대한 표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일본에서 통관 거부 된 한국산 식품 30건 중 16건이 냉동식품의 미생물 문제로 인해 통관 거부 되었음 《냉동식품 표준》의 주요 내용 1)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냉동식품 중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동결시킨 것으로 음식으로 제공할 때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세균 수(생균 수)가 검체 1g당 100,000 이하이고, 대장균이 음성이어야 함 2)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냉동식품 중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동결 시킨 것, 그리고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이외의 것) : 세균 수(생균 수)가 검체 1g당 100,000 이하이고, 대장균이 음성이어야 함 3)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으로서 동결시키지 직전 가열된 것 이외의 식품 : 세균 수(생균 수)가 검체 1g당 3,000,000 이하로 대장균이 음성이어야 함(단,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고, 섭취 전 가열이 필요한 냉동 생지(반죽)의 경우에는 대장균 음성 기준이 해당 없음)		
	애로·건의 사항	냉동식품 수출 시 한국과 미생물 기준이 달라 규격을 맞추기 어려움		
	기타	※ 《냉동식품에 대한 표준》의 원문 규정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tanbu/0000126767.pdf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피자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관세율 등 통관 검역시 주의사항
- 수입시 검사항목 등

조사 결과

- 관세 분류 조사
 - 문의처 : 도쿄 세관 및 오사카 세관 각기 확인한 결과임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 류	제 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 고
				WTO	
-	베이커리제품 - 냉동 피자	-	1905.90.313	30%	
				24%	

- 한국은 WTO 가맹국임에 따라 WTO 협정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만약 WTO 협정세율보다 잠정관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잠정세율이 적용됨
- 세관에 상담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상정되는 관세율은 상기 표와 같음. 현재, 귀사가 수출을 예정하시는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세율 확정을 위해서는 수입업체 등을 통해 일본 세관에 정식 문서로 회신 되는 사전교시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함
- 검역사항
 - 검역의 유형으로는 식물의 수출입 시 균이나 벌레들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물 검역과,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시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동물 검역이 있음
 - 동물 검역의 경우 육안으로 우육 육질이 보일 경우 수출이 불가하므로, 본 제품의 경우 우육 상태 확인이 필요함

● 수입 시 제출서류

-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는 제품 성분표, 제조 공정도, 제품 사진, INVOICE(인보이스), PACKING LIST(패킹리스트)의 5가지가 있으며, 무역협정 등 관세 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COUNTRY OF ORIGIN을 제출해야 함
- 제품 성분표는 제품 성분 중 사용금지성분 및 제한 성분의 함유량을 확인함
- 제조 공정도는 제조 공정 중 잘못된 과정이나 누락된 과정이 없는지를 확인함
- 제품 사진은 사진 등을 통해 제품의 성상이나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임
- 인보이스는 상품의 판매 단위 및 단가를 확인하는 용도임
- 패킹리스트는 상품의 포장 단위, 중량 등을 확인함
- 본 제품은 성분표의 세부성분 및 성분명칭 추가, 재확인이 필요하며, 제조 공정도에는 냉동보관 온도를 필수 기입해야 하므로, 공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수입 시 식품 검사 항목

- 식품검사에는 규격 성분 검사, 냉동 규격 검사, 레토르트 규격 검사, 청량음료 규격 검사, 모니터링 검사가 존재함
- 규격 성분 검사로 각 제한 성분의 해당 허용 수치를 확인함
- 냉동 규격 검사는 냉동식품의 세균 증식 수를 확인하는 것임
- 레토르트 규격 검사는 진공 및 살균상태를 확인하는 것임
- 청량음료 규격 검사는 중금속 및 세균의 증식 수를 확인하는 것임
- 모니터링 검사는 통관 완료 후 무작위로 실시되며, 검사내용은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함
- 본 제품은 검역소의 판단에 따라, 냉동식품 및 규격성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검사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음

순번	검사내용
(1)	세균수(생균수) : 100,000 /g 이하
(2)	대장균군 : 음성
(3)	E.coli : 음성
(4)	미립이산화규소 : 실제사용량 검출검사

● 성분 규정

- 일본 식품위생법상 무수이황산은 사용이 불가하며, 이산화규소는 미립으로 최대 2.0%까지 사용 가능함

● 검사 관련 주의사항

-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한 한국 내 검사기간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도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일본 도착 후 검역소에서 검사성적서에 있는 성분 이외에도 검사 명령을 할 경우, 일본 내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세균류의 검사는 한국의 검사성적서가 있어도 운송 시 균이 증식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검사기관의 성적서가 인정되지 않음
- 한국의 검사 성적서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일본 검사기관 성적서에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경우, 수입 허가가 불허됨
- 검역관의 지시에 의해 별도 추가서류 및 서류의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통관 관련 주의사항

- 가공식품을 일본에 수입 시에는 검사지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량 물량을 처음부터 수입하지 말고 소량의 테스트 통관을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통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이 계속되면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등의 페널티를 받게됨
- 수입제품의 검사 실시 유무 및 검사 항목 등에 대한 확인은 식품 수입 신청서를 관할 검역소에 제출한 후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결정함

자문 결론

- 현지 수입업체가 결정이 되면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현지화 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식품 검사 시 비용 지원, 패키지 포장디자인, 현지 마케팅 조사 등의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음. 단, 반드시 수입업체에서 신청해주어야 하며 도쿄지사로 직접 문의 필요
- 본 보고서 작성 당시와 실 수출 시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혹은 자문 완료 후 6개월이 초과될 경우 규정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해 재 문의를 권고함

2. 과실주 2종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관세율 등 통관 검역시 주의 사항
- 수입시 검사항목, 공장 등록 사항 등

자문 결과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 류	제 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 고
				WTO	
				RCEP	
-	기타 발효주 - 기타제품	-	2206.00-229	¥43.10/L	¥120,000 /KL * 주류세 부과
				¥42.40/L	
				¥36.34/L	

• 식품 규격 기준 분류

- 본 제품은 알콜을 첨가한 과실맛 주류로 알콜 농도(13℃ 미만)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류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성분 규정

- 본 제품이 0.02% 함유한 메타중아황산칼륨(POTASSIUM METABISULFITE)의 최대 사용량은 0.035%이며, 본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할 시 해당 성분이 실제로도 0.02%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함량검출 검사가 실시될 수 있음

• 공장 등록 관련 사항

- 일본의 경우 공장 사전 등록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어, 수입 시 검역소에 의해 수입가능 여부를 판단함
- 이에 공장 등록은 필요 없으나, 향후 동일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 및 제품을 일본 검역소에 등록시키는 사전확인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사전확인 등록제도를 이용하면 동일한 공장, 동일한 제품에 한해 3년에 1회로 검사가 면제되어 수입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3. 차류 3종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관세율 등 통관 검역 시 주의 사항
- 수입 시 검사항목 등

자문 결과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 류	제 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 고
				WTO	
-	알콜미함유 음료-기타음료제품	-	2202.99.200	16%	-
				9.6%	

• 식품 규격 기준 분류

- 본 제품은 검역소의 판단에 의해 청량음료수로 분류될 경우 시험 검사를 지시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시험 가능한 청량음료수 규격은 다음과 같음

순번	검사내용
(1)	음용 시 사용되는 배수(倍數)의 물로 용해한 액이 ‘식품, 첨가물등의 규격기준’ 중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2) 및(3)에 적합하여야 함
(2)	비스, 납 및 카드뮴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주석의 함유량은 150.0ppm을 초과해서는 안됨
(3)	유산균을 가하지 않은 청량음료수는 대장균군이 음성이고 세균수가 검체 1g당 3,000 이하하여야 함
(4)	유산균을 가한 청량음료수는 대장균군이 음성이고 세균수(유산균 제외)가 검체 1g당 3,000 이하하여야 함
(5)	기타 혼탁, 침전물, 비소, 납, 대장균군에 관한 검사

- 성분 규정

- 본 제품은 생지황즙, 복령, 숙지황, 당귀, 황기, 천궁 등의 생약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생약성분은 일반식품에 사용이 불가함
- 생약성분이 다성분으로 함유됨에 따라, 대체성분을 사용한 제품 조정보다는 신규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